

변상금 사전 통지서

대상자	① 성명	행당제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	② 생년월일		
	③ 주소	서울특별시 성동구		④ 전화번호	02-	
⑤ 부과내용						
재 산 의 표 시		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 (원)	비 고 (소유자)
소 재 지	지목	지적 (㎡)				
행당동 322-635	대지	18.00	18.00	2010. 11. 1. ~ 2011. 5. 1.	1,676,574	성동구
행당동 322-637	대지	9.00	9.00		838,287	성동구
행당동 322-638	대지	15.00	15.00		1,397,145	성동구
행당동 322-642	대지	30.00	30.00		2,794,290	성동구
행당동 336-17	도로	69.00	58.00		5,402,295	성동구
행당동 337-183	대지	14.00	14.00		1,304,002	성동구
					-이하 여백-	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5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,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·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 
2.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

2015년 월 일

성 동 구 청 장 (인)

행당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귀하

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

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변상금 부과 통지내역				의 건
소재지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 (원)	
행당동 322-635	18.00	2010. 11. 1. ~ 2011. 5. 1.	1,676,574	
행당동 322-637	9.00		838,287	
행당동 322-638	15.00		1,397,145	
행당동 322-642	30.00		2,794,290	
행당동 336-17	58.00		5,402,295	
행당동 337-183	14.00		1,304,002	
			-이하 여백-	

그 밖의 의견 (입증서류 등 첨부)

신청인 주 소: \_\_\_\_\_  
성 명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  
생년월일: \_\_\_\_\_  
전화번호: \_\_\_\_\_

년 월 일

성 동 구 청 장 귀하

